서울특별시 양천구 저장강박 의심가구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2020.10.21.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

복지건설위원회

서울특별시 양천구 저장강박 의심가구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1. 회부경위

본 제정조례안은 2020.10.07. 정순희 의원 외 5명의 의원으로부터 발의되어, 2020.10.08. 당 위원회로 회부됨에 따라 이를 검토하여 보고드림(의안번호 제2523호).

2. 제안이유

행동장애의 일종인 저장강박이 의심되는 구민의 가구가 보다 쾌적한 환경에서 거주할 수 있도록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조례의 사용되는 용어를 정의함(안 제2조).

나. 구청장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3조).

다. 조례의 적용 범위를 규정함(안 제4조).

라. 지원대상의 범위를 규정함(안 제5조).

마. 저장강박 의심가구에 대한 지원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6조).

바. 자원봉사자에 대한 지원 사항을 규정함(안 제7조).

사. 지역사회 협력체계에 대한 근거를 마련함(안 제8조).

4. 참고사항

가. 관련법령

-「지방자치법」 제22조

나. 예산조치 : 필요시 반영.

다. 관련부서 검토의견 : 없음.

라. 기타

1) 개정안 : 별 첨

2) 입법예고 : 2020. 10. 09. ~ 2020. 10. 13.

5. 검토의견(전문위원 신훈)

○ 본 제정조례안은 저장강박이 의심되는 사람이 거주하는 가구가 쾌적한 환경에서 거주할 수 있도록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모든 구민의 건강과 복리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임.

○ 본 조례 제정의 타당성을 살펴보면,

- 최근 EBS의 <극한직업>이라는 프로그램에서는 불필요한 짐을 버리지 못하고 쌓아두기만 하는 이들의 공간을 정리해주는 “정리정돈 전문가”가 소개됨. 이처럼 전문가까지 등장할 정도로 어떤 물건의 가치나 필요성과 상관없이 버리지 못하고 소유의 일부로 지속하여 일정 장소에 쌓아두는 사람들이 증가하고 있음. 이들을 의료적인 관점에서는 ‘강박장애’의 하위 유형인 ‘저장강박증애’로 구분하고 있으며, 2013년부터는 ‘저장장애(Hoarding disorder)’라는 별도의 범주로 구분하여 사용[1]하고 있음.

- 저장강박이 생기는 원인에 대해서 현재까지 명확하게 알려진 바는 없지만, 전문가들은 스트레스, 극심한 우울증, 사람과의 애착 형성이 어려워 사물과 강한 애착 관계를 형성한 결과 등과 같은 이유로 분석하고 있음[2]. 또 다른 전문가들은 의사결정 능력이나 행동에 대한 계획 등과 관련된 뇌의 전두엽 부위가 제 기능을 못하여 가치 판단 능력과 의사결정 능력이 손상된 것으로 분석하기도 함.[3]

- 저장강박은 스스로 ‘저장강박증’임을 자각하기 어렵고, 개인 위생이나 생활 환경에 악영향을 미치며, 가족관계뿐 아니라 이웃과의 갈등까지 유발하기도 함. 이뿐만 아니라 저장했던 물건이 떨어지면서 상해를

1) 미국 정신의학회(American Psychiatric Association)의 정신 질환의 진단 및 통계 편람 제5판(DSM-5) 인용

2) 버려야 산다, 저장 강박증이란? , 2020.09.14., 하이닥

3) 저장강박증이란 습관·절약과는 다른 강박장애, 2015.01.10., JTBC

일으키거나, 합선·발화 등의 화재 유발 및 화재 대피로 방해, 불결한 위생 상태로 인해 쥐나 바퀴벌레에 의한 감염 등의 문제를 일으킬 가능성이 있음. 결국, 저장강박의 문제는 개인의 문제로만 치부할 것이 아니라 가족 및 이웃에게까지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지속적인 관리와 지원이 필요함.

- 양천구의 경우, 2016년 7월부터 2019년 7월 사이에 저장강박 사례로 15가구가 발굴되었으며, 주로 주민신고로 발굴되었음. 2019년 조사된 자료에 따르면, 저장강박 의심가구는 17가구임.

【표 1】2019년 클린 하우스 지원 사업

사례발굴(가구)				발굴장소				개입방법(복수응답)			
계	주민신고	가정방문(공무원)	경찰등의뢰	계	주택(다세대, 다가구, 빌라)	공동주택(아파트, 오피스텔)	기타(무허가, 고시원)	환경정비	정신과 의뢰	사례관리	기타(서비스 연계)
15	8	6	1	15	7	7	1	14	4	6	8

【표 2】저장강박 의심가구 현황

의심가구	파악유형		
	주민신고	공무원파악	경찰 및 지역기관
17	2	15	-

- 또한, 양천구는 2019년 7월부터 12월 사이에 저장강박 의심가구 관련 사업으로 “클린 하우스 지원 사업”을 시행하여 긴급복구 4가구, 주거환경개선 5가구를 지원하였으며, 2020년 10월부터 12월 사이에도 “클린 하우스 지원 사업”을 시행할 계획임.

【그림 1】2019년 클린 하우스 지원 사업



<개입 초기>



<주거환경 개선 후>



<개입 초기>



<주거환경 개선 후>

- 이를 종합하면, 양천구에서 저장강박 장애를 갖고 있는 사람이 거주하는 가구를 발굴하고, 이들에게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 및 지원방안을 마련하려는 것은 주민의 복리 증진 및 건강 증진 차원에서 필요하다고 사료됨.

○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 안 제1조와 제2조에서는 조례의 제정 목적과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를 정의하고 있음.

- 안 제3조에서는 구청장의 책무를 규정하고 있음. 같은 조 제2항의 경우, '저장강박장애'는 의료적인 관점에서 정신질환의 일환으로 분류되고 있고, 재발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를 고려한 조문으로 사료됨. 또한 같은 조 제3항의 경우, 저장강박으로 의심되는 사례를

발굴하는 것이 어렵고, 발굴 과정 및 지원 과정에서 인권 침해에 대한 논란의 소지가 있는 것을 고려한 조문으로 보임.

- 안 제4조는 저장강박 의심가구의 적용 범위를 명확히 하기 위해서 양천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저장강박 의심가구로 하고 있음.
- 안 제5조에서는 지원대상을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긴급지원대상자, 한부모가족, 장애인, 기초연금 수급자, 통합사례관리 대상으로 정의하고 있음.
- 안 제6조제1항은 저장강박 의심가구에 대해 ①생활폐기물 수거, ②보건소 등 정신건강 전문기관 연계, ③주거환경 개선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정의함.
- 저장강박 의심가구를 지원할 때, 개인정보를 다루기 때문에 인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음. 따라서, 당사자 또는 보호의무자의 동의 없이는 진행할 수 없음. 하지만, 간혹 당사자가 심리·신체적인 이유로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없을 때, 보호의무자가 없어서 지원을 할 수 없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음. 안 제6조제2항은 이런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심의를 거치도록 한 조문으로 사료됨.
- 안 제7조에서는 저장강박 의심가구 주거 환경 개선을 위해 현장에 지원된 자원봉사자에게 물품 또는 비용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것으로 「서울특별시 양천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제18조를 인용한 것임.
- 안 제8조 저장강박 의심가구 지원을 위해 지역사회 유관기관들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한 것으로 별 문제는 없다고 사료됨.

○ 저장강박증은 개인의 문제로도 볼 수 있지만, 주위 사람들에게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사회적 문제로 바라볼 수 있음. 특히 독거노인이나 소외계층은 고립이나 우울증 등과 연계되어 재발우려가 크기 때문에 지속적인 관심과 관리, 지원이 필요함. 따라서 본 조례안은 제도적 사각지대에 처한 저장강박 의심가구의 주거환경개선 등의 지원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구민의 복리증진 및 건강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됨.

【관련법령】

「지방자치법」

제22조(조례)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